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75
----------	-----

2012년 7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6월 17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12년 6월 19일
- 다. 상정일자 : 제23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12년 6월 26일 상정·의결(수정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창학 행정국장)

### 가. 제안 이유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을 통해 시민의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 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나. 주요 내용

- 서울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음.

- 개방공간의 사용자격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 및 주소지가 되어있는 단체,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자로 함.
- 개방공간의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기준으로 하며, 주민교육 등 특별한 경우에는 개방공간을 최대 4월의 범위내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종료 후 연장할 수 있음.
-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 90일전부터 5일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사용신청을 하여야 하고, 사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통보하도록 함.
- 개방공간의 사용자에게 공간규모별로 사용료를 부과·징수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4조

나. 예산조치 : 예산담당관 협의.

다. 기 타

(1) 입법예고 (2012. 5. 17 ~ 6. 7) 결과 : 별첨.

(2) 규제심사 결과 : 규제심사 대상 아님.

(3)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5)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 별첨.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용훈)

### 가. 제정안에 대한 개괄적 고찰

#### 1) 공공시설 유희공간 개방 목적과 대상

- 제정안은 시민의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에 대한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제정안 제1조).
- 집행부는 27개 시설 33개 공간을 개방하겠다는 방침이며, 자치구에 대해서는 「자치구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기준 조례안」을 마련하여 제정을 권고함으로써 자치구의 418개 시설 685개 공간을 개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임.
- ※ 개방공간은 본청 1개(후생동 강당), 사업소 29개(수도사업소 7개, 소방서 8개, 동부공원 녹지사업소 4 등), 위탁 3개(목동열병합발전소 등)로써 대부분 회의실·강당시설임. 본청 후생동 강당은 주말 낮 시간(10시~17시) 개방 계획임.
- 시범으로 개방하는 5개 자치구에 대하여 회의장비 구입 등의 용도로 특별교부금(366백만원)을 교부한 바 있음('12.5월).

#### ▶ 시범운영 5개 자치구 지원(5월중) : 366백만원

구 분	총 계	중 구	성북구	서대문구	은평구	구로구
개방공간수	183	20	37	56	54	16
지 원 액 (백만원)	366	40	74	112	108	32

- ※ 특별교부금 산정기준: 개방 공간당 2백만원.
- ※ 하반기 나머지 20개 자치구가 유희공간을 개방할 경우, 이에 준하여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계획임.
- 개방공간 사용신청을 위한 자격요건으로 서울시민 또는 서울시에 주소를 둔 직장·학교·단체에 소속한 자로 하였으며, 시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격을 인정하였음(제정안 제6조).
- 그러나 정치적 목적 및 종교활동, 영리(營利),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음(제정안 제10조).

-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조례 규정 사항과 사용목적에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 기타 시장이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정안 제11조), 사용료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하여 유지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제정안 제12조 및 별표).
  -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료를 반환할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하고, 사용자의 사정에 따른 경우에는 사용일 2일전 반환은 납부액의 90%<sup>1)</sup>, 하루전은 80%, 사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음(제정안 제13조제2항)<sup>2)</sup>. 그러나 예약과 취소 남발에 따른 시설의 활용도 저하를 막기 위해 반환을 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금번 제정안은 종전 27개 개방대상 중 6개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조례가 있으나, 나머지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개방근거 규정이 없어 이의 근거마련을 위한 제정안으로서 제출된 것임을 감안하여 다른 조례와의 충돌을 고려한 바, 일반적 효력을 갖는 조례로서 규정하였음(제정안 제4조).
- ※ 제정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2) 개방공간 신청 절차

- 개방공간 사용신청은 사용일(또는 사용기간 개시일)부터 90일전부터 5일전까지 인터넷 등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사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제정안 제8조), 사용허가를 받은 자(사용자)는 허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나(제정안

1) 시청 후생동 강당을 4시간 이용할 경우 300,000원인 바, 사용예정일로부터 2일전 최소시 270,000원(90%), 1일전 최소시 240,000원(80%) 반환받게 됨.

2) 인재개발원의 경우 사용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최소시 사용료의 75%, 1일전까지는 50%를 반환함.

제12조), 개방 공간을 1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 단위로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용 신청이 경합할 경우를 대비하여 우선순위를 규정한 바, 개인과 단체가 경합할 경우 단체를 우선하고, 수 개의 단체간에는 '평생학습,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단체'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정안 제9조).
- 사용기간은 1일 1회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주민교육 등 특별한 경우에는 최대 4월의 범위내에서 사용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재신청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기간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3) 사용자의 의무

- 사용자가 개방공간의 사용을 위해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해야 함(제정안 제14조).
- 또한 사용자는 개방공간 사용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는 바, 시설 등을 훼손할 경우 원상복구·변상 또는 손해배상 의무가 있음(제정안 제15조제2항).
- 사용자의 개방공간 사용권은 시장의 승인 없이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함(제정안 제16조).

### 4) 시장의 권한과 의무

- 시장은 개방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에,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개방공간의 범위(사용공간, 사용시간 등)를 변경할 수 있음.
- 또한 사용신청자에 대한 사용허가권을 가지며, 신청자 경합시 우선 사용자를 선정할 수 있고, 사용허가의 제외대상과 허가 취소·정지를 명할 수 있음.

## 나. 제정안에 대한 평가

- 제정안은 특정시간대에 사용되지 않는 공공시설을 시민에게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소정의 사용료를 받고 개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시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 그러나 주민교육 등을 위해서 사용기간을 최대 4개월까지 허가할 수 있고, 동일 사용자가 재신청할 경우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점에서 일부 특정 단체가 장기간 점유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시민의 사용편의라는 일반적 목적을 고려할 때) 우려가 있음.
- 더욱이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는 경우 '평생학습,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단체'에게 우선 사용허가를 시장에게 주고 있는 바, 평가방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 또한 개방공간의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시설관리업무(휴일 근무 등) 및 소요비용(시설유지관리비 등) 발생에 대한 행정지원인력확충이나 예산확보 등 유휴공간 개방에 따른 검토 및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검토의견)
이용재	<p>◇ 종교행사 관련 개방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에게 공간을 개방하는 것은 환영하나 종교행사 불허는 부당</li> <li>○ 조례로 종교행사를 무조건 제한하지 말고 지역위원회를 두어 여기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면 함</li> </ul>	<p>◇ 미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방하는 공간은 공공시설의 공간 중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는 특정시간대에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으로, 공공시설의 특성상 정치행위, 종교행사,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사용허가 제한대상으로 하고 있음</li> <li>○ 종교행사를 허용할 경우, 종교적인 문제 및 논의가 직접 행정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고, 특정 종교와 행정기관이 연결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기 쉬움</li> </ul>
문진숙	<p>◇ 공공시설의 개방범위, 사용료 징수범위가 불명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공공시설에 대하여 시장이 개방여부, 범위 등을 정하여 개방을 하고 별표에 규정된 시설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징수하는지, 아니면 별표에 규정된 시설만 개방하는 것인지 불명확함</li> </ul> <p>◇ 조례의 형태상 개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4장 17개 조문으로, 장의 구분은 불필요함</li> <li>○ 제13조는 1개항으로 "①" 삭제</li> <li>○ 부칙 중 "①(시행일)" 삭제</li> </ul>	<p>◇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방대상공간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으로 특정함으로써 개방범위 및 사용료 징수범위를 명확하게 규정</li> </ul> <p>◇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 구분 삭제</li> <li>○ "①" 삭제</li> <li>○ "①(시행일)" 삭제</li> </ul>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검토의견)
<p>김주일 (의견2개로 중복 입력)</p>	<p>◇ 제도 시행시 적절한 운영 필요</p> <p>○특정인(종교, 정치적)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직군에게 공익적 목적의 모임을 위한 공간이 되었으면 함</p>	<p>◇ 조례와는 무관</p> <p>○실제 제도를 시행하면서 다양한 직군에게 공익적 목적의 모임을 위한 공간개방이 될 수 있도록 조치</p>
<p>김유정</p>	<p>◇ 사용료의 적정성 여부</p> <p>○일반인이 행정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비사용자와의 관계에서 특혜로, 세금으로 운영하는 시설사용료가 너무 낮고, 어떤 경우에 사용료를 감면하는지 명확하지 않음</p> <p>◇ 예약신청기간, 허가기간, 사용료 납부기간 등 명기 필요</p> <p>○사용시민의 입장에서 신청기간이나 신청에 따른 예약확정여부, 사용료 납부기간,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p>	<p>◇ 반영</p> <p>○사용료는 시설 사용자에게 필요 최소한의 요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기는 하나,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면적당 사용료 징수구분을 세분화하여 사용자의 실제 부담액 수준으로 일부 공간에 대하여 상향 조정함</p> <p>○사용료는 필요최소한의 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감면규정 삭제</p> <p>◇ 반영</p> <p>○개방하는 시설의 공간특성이 다양하여 시설특성을 반영하여 신청기간 등을 설정하도록 하는 취지였으나, 시민의 입장에서 사용과 관련된 기간을 알기 쉽도록 조례로 규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기간 : 사용예정일 90일 ~ 5일전</li> <li>- 허가기한 : 신청일로부터 3일내</li> <li>- 사용료 납부기한 : 허가일로부터 2일내</li> </ul> <p>○사용료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반환비율 명기함</p>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세 입 : 개방공간의 사용료 및 냉난방 요금 등
- 세 출 : 개방공간의 유지 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등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평균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사용료 수입과 가산요금 등 세입에서 공공요금 충당분을 제외한 연평균 세입 증가액이 87,110천원으로 예상
  - 세입 : 사용료 수입 등 141,554천원
  - 세출 : 공공요금 등 54,444천원

(단위:천원)

대상시설 (공간)	연 평균 세입증가액 (E=C-D)	세 입			세 출
		계 (C=A+B)	연평균사용료 수입(A)	가산요금 등 (B=A*30%)	공공요금 등 (D=A*50%)
25(31)	87,110	141,554	108,888	32,666	54,444

4. 작성자 : 행정국 행정과 행정협력팀 김향자 주무관(2171-2229)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특정단체에게 최대 4개월간 유희공간을 개방하는 것은 다른 사용신청자와의 형평성 침해 논란 있을 수 있음.

(답변) 사용자 제한 규정에 관한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동의함.

(질의) 시설 관리자의 권한과 이용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상세한 약관 마련 이 필요함.

(답변)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반영하겠음.

(질의) 우선신청자에 대하여 조례안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단체가 우선한다는 조문은 시설관리자의 자의적 집행이 가능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답변)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동의함.

## 6. 토 론 요 지 : 없 음.

## 7. 수정안의 요지

### 가. 수정이유

- 사용가능 기간 및 우선사용 신청단체를 명확히 하는 등 조례의 내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하고자 함.

## 8.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

##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875 관련
----------	-----------

제안년월일 : 2012년 6월 27일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 1. 수정이유

사용가능 기간 및 우선사용 신청단체를 명확히 하는 등 조례의 내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안 제7조 제2항 중 “최대 4월의 범위내에서”를 “최대 4개월, 16회의 범위 내에서”로 수정함(안제7조제2항).
- 안 제9조 제2호 중 “평생학습,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단체 우선”을 “우선신청 단체”로 수정함(안제9조제2호).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4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수정안조문대비표 1부.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 제2항 중 “최대 4월의 범위내에서”를 “최대 4개월, 16회의 범위 내에서”로 한다.

안 제9조 제2호 중 “평생학습,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단체 우선”을 “우선신청 단체”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시민의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li> <li>2. “유휴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대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시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li> <li>3. “시민”이란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li> <li>4. “사용”이란 사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등의 활동을 말한다.</li> <li>5. “사용자”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li> <li>6. “사용료”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li> </ol> <p>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사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사용을 위하</p>	<p>제1조(목적) &lt;제정안과 같음&gt;</p> <p>제2조(정의) &lt;제정안과 같음&gt;</p> <p>제3조(시장 등의 책무) &lt;제정안과 같음&gt;</p>

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개방공간의 범위 등) ① 시장은 유휴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민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공간, 사용시간 등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시민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며, 개방공간 예약시스템에 공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사용자격) 개방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자
3.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기간) ① 개방공간의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민교육 등 특별한 경우에는 **최대 4월의** 범위내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종료 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민이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정안과 같음>

제5조(개방공간의 범위 등) <제정안과 같음>

제6조(사용자격) <제정안과 같음>

제7조(사용기간)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최대 4개월, 16회의** 범위 내에서 .....  
.....  
....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정안과 같음>

일 90일전부터 5일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용신청을 접수하였을 때는 사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우선사용) 시장은 개방공간에 대한 사용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개인과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시 단체 우선
2. 여러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시 평생학습,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단체 우선

제10조(사용허가 제외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0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사용목적에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기타 시장이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우선사용) .....  
.....  
.....

1. ....
2. 여러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시 우선신청 단체

제10조(사용허가 제외대상) <제정안과 같음>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제정안과 같음>

제12조(사용료)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개방공간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13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공간을 1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 단위로 분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없이 개방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

2.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반환은 사용일 3일전까지 전액 반환, 사용일 2일전 90% 반환, 사용일 전일 80% 반환, 사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3. 사용자가 개방공간을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해 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제외하고, 잔여 사용일 각각에 대해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여 사용료를 반환

제14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① 사용자는 개방공간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사용료) <제정안과 같음>

제13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정안과 같음>

제14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제정안과 같음>

제15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개방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개방공간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7조(준용규정) 사용료의 징수·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 회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정안과 같음>

제16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정안과 같음>

제17조(준용규정) <제정안과 같음>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을 통해 시민의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 “유희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대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시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3. “시민”이란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사용”이란 사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등의 활동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사용료”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사용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개방공간의 범위 등)** ① 시장은 유희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민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공간, 사용시간 등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시민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며, 개방공간 예약시스템에 공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사용자격)** 개방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자
3.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기간)** ① 개방공간의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민교육 등 특별한 경우에는 최대 4개월, 16회의 범위내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종료 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민이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 90일전부터 5일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용신청을 접수하였을 때는 사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우선사용)** 시장은 개방공간에 대한 사용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 1. 개인과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시 단체 우선
- 2. 여러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시 우선신청 단체

**제10조(사용허가 제외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4.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 10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2. 사용목적에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3. 기타 시장이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료)**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② 개방공간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13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 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공간을 1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 단위로 분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없이 개방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

2.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반환은 사용일 3일전까지 전액반환, 사용일 2일전 90% 반환, 사용일 전일 80% 반환, 사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3. 사용자가 개방공간을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해 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제외하고, 잔여 사용일 각각에 대해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여 사용료를 반환

**제14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① 사용자는 개방공간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개방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개방공간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7조(준용규정) 사용료의 징수·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 회계 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사용료(제12조 제2항 관련)

공간명	면 적	사 용 료		비 고
		기준시간	금액	
회의실, 강당 등	33㎡이하	2시간 (초과시간당)	10,000원 (5,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냉·난방기를 가동할 때에는 시설의 공간별로 요금을 정하여 별도 부과</li> </ul>
	34~83㎡이하		20,000원 (10,000원)	
	84~165㎡이하		30,000원 (15,000원)	
	166~248㎡이하		40,000원 (20,000원)	
	249~330㎡이하		50,000원 (25,000원)	
	330㎡초과		60,000원 (30,000원)	
시청 후생동 강당	292㎡ (부대시설 325㎡)	2시간 (초과시간당)	150,000원 (75,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요금 사용자 별도 부담(시간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방 : 121,640원 (수도 7,430원, 가스 63,960원, 전기 50,250원)</li> <li>- 냉방 : 68,520원 (수도 7,430원, 전기 61,090원)</li> <li>- 비 냉·난방 : 8,930원 (수도 7,430원, 전기 1,500원)</li> </ul> </li> <li>◦ 예식 식당(2,3층) 사용시 사용료 별도</li> </ul>

- ① 기준시간은 2시간으로, 기준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사용료는 기준사용료의 50%
- ②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는 기준시간으로 봄
- ③ 설비 설치 및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 ④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 ⑤ 사용자의 주차장 사용요금은 별도 징수함

[별지 제1호 서식]

##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자	개인 ( )	성명		전화번호						
		주소								
	단체 ( )	단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FAX			
사용시설 및 공간										
사용일시		년 월 일(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요일)	시	분까지(주회, 총회)	
사용목적										
사용인원		총명	주차차량		총대					
기타참고사항										
사용료		일금 원(W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사용허가서

사용자	개인 ( )	성명		전화번호	
		주소			
	단체 ( )	단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FAX	
주소					
사용시설 및 공간					
사용일시		년 월 일(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요일)	시	분까지(주회, 총회)	
사용목적					
사용인원					
사용료		일금	원(W	)	
허가조건		1. 사용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별지 제3호 서식]

##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사용료 반환 신청서

신청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사용시설 및 공간				
사용목적 및 내용				
반환금액				
반환신청 사유			은행계좌 번호 (예금주)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